

# 녹십자 경영위원회규정

제정 2014.10.20  
전면 개정 2017.02.02  
개정 2021.01.01  
개정 2024.03.28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안에 대한 심의, 결의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,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권한)** ①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,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.

② 경영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안에 관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관리·감독할 수 있다.

## 제2장 구 성

**제4조(구성)** 경영위원회의 위원은 사내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5조(의장)** 경영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, 위원장은 경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다만,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선임(先任) 순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4.3.28>

## 제3장 회 의

제6조(개최) ① 경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 <개정 2021.1.1>

② <삭제 2021.1.1>

③ <삭제 2021.1.1>

제7조(소집) ① 경영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 일시, 장소를 정하여 12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경영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(결의방법) ① 경영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
② 경영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, 이 경우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통지의무) 경영위원회는 결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결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부의사항) ① 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(연결 자기자본, 매출액 등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). <개정 2021.1.1>

1. 경영에 관한 사항

(1) 연간 사업계획

(2) 연간 또는 중장기 경영전략

(3) 50억원 이상의 영업양수도 (단, 연결 자산총액, 연결 부채총액, 연결 매출액 5%미만)

2. 재무에 관한 사항

(1) 연결 자기자본 5% 이상 장·단기 차입 (단, 연결 자기자본 10% 미만) <개정 2021.1.1>

(2) 연결 자기자본 2.5% 이상 담보 제공 또는 채무 보증 (단, 연결 자기자본 5% 미만)

<개정 2021.1.1>

(3) 5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처분 (단, 연결 자기자본 5% 미만)

- (4) 파생상품의 거래 (단, 연결 자기자본 5% 미만)
- (5) 50억원 이상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
- (6) 금융관행 또는 대외 거래선의 내규 등에 의해 금융거래 시 (차입 등) 그 규모에 상관 없이 이사회 의사록에 준하는 의사록을 대외거래선이 요구할 경우

### 3. 투자 및 지출

- (1) 5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 개발 (단, 연결 자기자본 5% 미만)
- (2) 50억원 이상의 개발과제 선정 (단, 연결 자기자본 5% 미만)
- (3) 50억원 이상의 특허권 양수도 / 기술도입, 이전, 제휴 (License In/Out) (단, 연결 자기자본 5% 미만)
- (4) 50억원 이상의 공장 및 연구소 신·증축 (단, 연결 자기자본 5% 미만)
- (5) 50억원 이상의 유·무형자산(토지, 생산설비, 실험·전산기기 등)의 취득 및 처분 (단, 연결 자기자본 5% 미만)
- (6) 50억원 이상의 비경상적 경비지출 (R&D 용역 계약, 도급 계약 등) (단, 연결 자기자본 5% 미만)
- (7) 1억원 이상의 기부금(동일 대상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 기부금 누계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. 단, 10억원 미만) <개정 2021.1.1>

### 4. 조직 및 인사

- (1) 조직운영 기본원칙 변경
- (2) 급여체계, 상여 및 복리후생제도의 기본 원칙 결정 및 변경
- (3) 임원 평가

### 5. 기타 (기타 경영위원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나 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)

② 경영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**제11조(위임)** 경영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체적이고,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업무집행은 대표이사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**제12조(관계인의 출석)**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13조(의사록)** ① 경영위원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**제14조(간사)** ① 경영위원회는 경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경영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며, 의장의 지시에 따라 경영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7년 02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24년 0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